

# 「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8월 2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9월 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4년 9월 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투자유치 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19조)
-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(안 제2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「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4. 8. 26.
-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상정일자 : 2024. 9. 5.

#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평창군 투자유치 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19조)
-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(안 제20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서는 지자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심의회, 위원회 등)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정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음.

[표] 위원회 정비 방안

< 기본 방향 >

정비 대상		정비 방안
법령상 임의위원회 / 조례상 위원회	신설 위원회	신설 최대한 억제
	미개최 위원회	· 3년간 미개최 ⇒ 폐지
		· 1년간 미개최 ⇒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
	비효율 위원회	· 기능 유사·중복 ⇒ 통·폐합
* 연 3회 미만 개최, 구성·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· 기능 독립 ⇒ (목적달성) 폐지 (한시필요) 존속기한 설정 (내부안건) 협의체 전환 (존속필요·안건少) 비상설화		
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(행안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	· 미개최 · 비효율	⇒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(행자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

## 나. 입법의 취지

-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.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9조(위원회 구성 등)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,  
제20조(구성 등) 제4항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 
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 투자유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비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2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운영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효율성 제고

## 2. 주요내용

가. 투자유치 위원회 비상설화 신설(안 제19조)

- 제3항 “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” 신설

나.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(안 제20조)

- 제4항 “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”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7. 1. ~ 2024. 7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4-930호, 경제과-4778(2024. 7. 22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9239(2024. 6. 17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실-9239(2024. 6. 17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1668(2024. 6. 24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773(2024. 7. 29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797(2024. 8. 14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설치한다”를 “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설치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9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제20조(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20조(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

###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24. 7. 10.]

### 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

-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이 서 진
연락처	(033) 330 - 2540